#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955

발의연월일: 2025. 4. 18.

발 의 자:김현정ㆍ이수진ㆍ김남근

김문수 · 박홍근 · 양부남

이강일 • 양문석 • 박균택

민병덕 • 박정현 • 남인순

박주민 · 신정훈 · 홍기원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로 추진되는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었음.

국방부는 당초 2024년까지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평택, 용산, 동두천 등 11개 미군기지 이전 작업을 위한 사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등 반환 미군기지 매각이 지연되 어 평택시 지원 사업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하고.

지역개발계획 수립 시 공여해제반환재산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향후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 해결과 지원이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공여해제반환재산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개발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지역개발계획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지역개발계획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연차별 개발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개발계획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

립된 연차별 개발계획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14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확 제14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확 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평택 정) ① -----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다.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공여해제반환재산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10. (현행과 같음) 10. (생략)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 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부칙 ② (유효기간) 이 법은 2026년 12 ② (유효기간) -----2030년--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